전주효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(안)

1차개정 2008.09.05. 2차개정 2012.06.25. 3차개정 2012.11.05. 4차개정 2016.02.05. 5차개정 2020.12.00. 6차개정 2023.10.(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유치원은 전주효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라 한다.(이하'본원'이라 함)

제3조(위치) 본원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송정로 47번지(효자동 1가)에 둔다.

제2장 교육연한 · 학기 및 휴업일

제4조(교육연한) 본원의 교육연한은 1~3년으로 한다. 단, 취학 유예자인 경우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학기)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한다. 제1학기는 3월 1일 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·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 날까지,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6조(휴업일)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관공서의 공휴일
- 2. 국가가 정하는 임시휴일
- 3. 유치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
- 4. 하계휴가, 동계휴가 및 학년말 휴가
- 5. 본교 개교기념일(단, 재량휴업일로 정한 경우)
- 6. 기타휴업일: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
 - 7. 휴업일 중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 편성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제3장 학급편제 및 원이정원

제7조(학급편제) 본원의 학급 수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8조(원아정원) 본원의 원아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유치원 학급편성기준에 따른다.

제4장 교육과정 및 수업일수

제9조(교육과정 및 교육내용) 본원은 국가고시 유치원 교육과정, 전라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면성·운영 지침, 전주교육지원청 유아교육계획을 근거로 본원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선정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한다.

제10조(수업일수)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

- ② 관할청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, 원장은 그 휴업 명령에 따라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.
- ③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정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
- 1. 교외(가정)체험학습 기간은 매 학년도 최대 15일까지 인정 한다.
- 2. 교외(가정)체험학습 운영 절차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본원에 제출한 후 실시하며 끝난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 한다.

제11조(교육시간) 본원은 매일 4~5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한다. 단, 학부모의 요구와 제반 여건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5장 입학·편입학·휴학·재입학·전입학·퇴학· 졸업 및 수료

제12조(입학자격)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 단, 초등학교 입학 유예자도 포함한다.

제13조(입학시기) 본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도 교육일수를 기준으로 졸업 및 수료가 가능한 시점까지로 한다.(단, 당해연도 연간 교육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하되, 불가피한 경우 기관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할 수 있다.)

제14조(입학결정) 본원에 입학하려는 자의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(단, 특수교육대상자, 재원생의 형제·자매, 기초생활수급권자, 보훈자녀, 다문화 자녀, 다자녀 및 소외계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 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)

제15조(편입학) 본원에서 수료 후 동 연령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

편입학할 수 있다.

제16조(휴학 및 재입학) 본원에서 재학하던 중 질병, 사고, 기타 원인 등의 사유가 발생한 유아는 학년도말까지 휴학할 수 있으며, 휴학을 한 유아는 다음 학년도에 재입학할 수 있다. 제17조(전입학)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학할 수 있다.

- 1. 유치원 원아가 주소의 이전으로 전출하고자 할 때 이를 허가한다.
- 2. 다른 유치원에서 전입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한다.

제18조(퇴학명령)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.

- 1.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
- 2.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제19조(졸업) 원장은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며.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
제20조(수료) 원장은 만3~4세의 원아 중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.(단, 만5세아 중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)

제6장 교육비 납입 및 기타의 비용

제21조(수업료 및 기타의 비용) ① 본원의 수업료는 「전라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시행규칙」에 의한다.

② 기타의 비용 징수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·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제22조(징벌) 원장은 제21조의 제 비용의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개월 이상 된 자에 대하여 출석의 정지처분을, 3개월 이상 된 자에 대하여 퇴학처분 할 수 있다.

제7장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

제23조(생활지도의 범위)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.

- ①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
- ②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・사용
- ③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
- 1. 다른 유아 및 교원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공격적인 행위, 물건을 의도적으로 던지거나 부수는 공격적인 행위, 자기 자신에 행하는 자학 행위 등
- 2. 유치원 시설 및 각종 탈 것을 위험하게 이용하는 행위, 보행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
- 3. 그 밖의 「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」의 생활안전, 교통안전,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, 약물 및 사이버 과의존 예방, 재난안전, 직업안전,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

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

- ④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
- ⑤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
- ⑥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
- ⑦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
 - 1. 욕설 및 폭언, 유행어, 속어를 사용하는 경우
- 2.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반복·지속적으로 하는 경우
- 3. 지속적인 놀림, 조롱, 비하하는 말 등으로 타인에게 모묙감 및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
- ⑧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
-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
- 10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제24조(상담)

- ① 원장과 교원, 유아 또는 보호자는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,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.
-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원장과 교원,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,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⑤ 제 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.
- ⑥ 제 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.
- 1. 사전에 목적, 일시,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
- 2.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
- 3.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
- ①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, 협박,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⑧ 교원은 상호 협의된 상담이더라도, 상담하려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밝히고 상담을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다.
- 1.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경우

- 2.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도구,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
- 3. 교원에게 폭언, 욕설, 협박 등을 하는 경우
- 4. 교원 등에게 물리력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
- 5. 교원의 직무 의무가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
- 6. 교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, 반복적으로 질의·요구하는 경우
- 7. 상호 협의된 시간을 벗어난 시간에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
- 8. 근무시간 이외의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

제25조(훈육)

- ① 원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, 제지,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.
- ② '조언'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)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. '주의'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.
- ③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.
- ④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,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.
- ⑥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.
 - 1.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은 칼, 가위, 송곳 등의 날카로운 도구, 장난감 칼, 장난감 총, 공구, 레이저포인터, 화학약품 등
 - 2.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은 술, 담배, 본드, 부탄가스, 마약류 등
- 3. 기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은 학급의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 중 고가의 장난감, 고액의 현금, 교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등

제26조(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)

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,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제 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8장 규칙 개정

제27조(규칙 개정)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원 협의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- 1. 본 규칙은 2023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정한다.